|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25호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규범하고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유관 개인소득세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은 납세연도 중 개업, 합병, 말소 및 기타원인으로 인해 납세연도의 실제경영 기간이 1년이 안 된 경우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독자기업 투자자와 합명기업 개인에 대해 합명인의 생산경영소득을 개인소득세로 계산할 때 실제경영 기간은 1개 납세연도이다.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 표준은 실제경영 월수에 따라 매월 3,500 위안을 공제표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소득액 = 당해년도 수입총액 - 원가, 비용 및 손실 - 당해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액  당해 투자자 본인의 비용공제액 = 월 공제비용(3,500 위안/월) x 당해 실제경영 월수  납부세액 = 과세소득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14년도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과 합명기업 생산경영소득의 개인소득세 계산은 본 공고를 적용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4월2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  **个人所得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25号  　 为规范个人所得税征收管理，根据个人所得税法规定，现就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有关个人所得税问题公告如下：  　　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因在纳税年度中间开业、合并、注销及其他原因，导致该纳税年度的实际经营期不足1年的，对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和合伙企业自然人合伙人的生产经营所得计算个人所得税时，以其实际经营期为1个纳税年度。投资者本人的费用扣除标准，应按照其实际经营月份数，以每月3500元的减除标准确定。计算公式如下：  　　应纳税所得额＝该年度收入总额－成本、费用及损失－当年投资者本人的费用扣除额  　　当年投资者本人的费用扣除额＝月减除费用（3500元/月）×当年实际经营月份数  　　应纳税额＝应纳税所得额×税率－速算扣除数  　　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2014年度个体工商户、个人独资企业和合伙企业生产经营所得的个人所得税计算，适用本公告。  　　特此公告。   　　 国家税务总局  2014年4月23日 |